

서식 17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검토서식

검토 사항		적합 여부			
연구개발예외	<p>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할 것</p>	<p>○연구개발용역 -위탁하였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이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일 것 (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,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 관리 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) -서비스는 자체 한정하여 인정 과학기술분야 결합된 서비스의 경우 위탁 공동연구개발도 인정R&D)</p>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예</td> <td>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아니요</td> </tr> </table>	예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아니요
예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아니요				
연구개발기전	<p>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 용역을 「조특령」 별표6.1. 나.1)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(재위탁 포함) 할 것</p>	<p>○다음의 기관에게 위탁(재위탁 포함) 또는 공동연구개발함에 따른 비용일 것 -대학, 전문대학, 국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국내외 비영리 법인 (부설 연구기관 포함) 국내외 연구기관 -전담부서등(직접 수행한 부분 한정)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-연구개발서비스업 영위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외 소재 기업 -산학협력단, 산업기술연구조합,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- 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 §4②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(산업디자인 전문회사, 한국디자인진흥원 등) ○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조특칙 §7⑥(4)~(7) 기관에 위탁 및 재위탁의 경우는 국내 소재 연구기업으로 한정 (다만, 법령 [별표7] 제7 호가목6)~8)에 따른 임상1상~3상 시험과 법령 [별표7의2] 제3 호나목~마목 및 제7 호 다목~바목에 따른 비임상, 임상 1상~3상 시험의 경우는 제외) ○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조교수 이상인 자에게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할 것</p>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예</td> <td>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아니요</td> </tr> </table>	예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아니요
예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아니요				
연구개발비	<p>정부출연금 등으로 지급한 연구개발비 등 제외</p>	<p>○조특령 제9 조①에 따라 다음의 비용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 1. 조특법 제10 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</p>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예</td> <td>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아니요</td> </tr> </table>	예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아니요
예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아니요				